

국 민 안 전 처

주 의 요 구

제 목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부실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내 용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강원도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부적정

강원도 ○○○자원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개인활동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주요 점검내용’으로 ‘음주운행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군 등에는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음주측정 장비가 없고 특히, 홍천·영월·평창·정선·양구·인

제군은 카메라 등 어떠한 단속 및 안전점검 장비가 전무하며 화천군만 카메라, 구명조끼 등을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7개 군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강원도의 “수상레저 안전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음주단속 장비 미확 보로 음주단속 실적은 전무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과속 등의 단속 필수장비인 카메라 등이 없어 형식적인 단속 활동에 그치는 등 수상레저 합동점검 및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2. 휴·폐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사업소의 보험가입기간 만료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 조에 따르면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수상레저 사업장 중 2016년 10월 5일 현재, ‘휴업’ 이나 ‘폐업’ 등 관련조치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안전조치나 안전점검 및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

[표] 2016년 동력수상레저사업장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 가입 기간 만료

구분	계	대 상
영월군	12개 사업소	○○○○레프팅, ○○○○○레프팅, ○○○○레프팅, ○○○○○레프팅, ○○○○레프팅, ○○○○○클럽, ○○○레프팅, ○○○○○○, ○○○레프팅, ○○○클럽 => 8.31 만료 ○○○○○○레프팅, ○○레저 => 9.31 만료
평창군	2개 사업소	○○○○레저개발, ○레포츠 => 8.31 만료
정선군	2개 사업소	○○○○, ○○○○레프팅레저타운 => 8.31 만료
인제군	6개 사업소	○레포츠, ○○레포츠, ○○레포츠, ○레포츠, ○레포츠, ○○커뮤니티 => 8.31 만료

조치할 사항 홍천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화천군수, 양구
군수, 인제군수는

- ① 수상레저사업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합동점검이나 단속 업무시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단속업무)등을 통해 수상레저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②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수상레저사업소에 대하여 ‘휴업’ 및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